

## 논문집 원고 심사 규정

### 제1조 논문집 원고의 투고

- (1) 한국유체기계학회 논문집에 게재되는 원고의 종류는 유체기계 관련분야의 연구논문(Research Paper), 총설(Review Paper), 단보(Technical Note or Letter), 기술자료(Data Communication)로 하며 본 학회지에 투고되기 전에 다른 학술잡지 및 기타 출판물에 발표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며 각각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.  
연구논문 : 유체기계 관련분야의 독창적인 연구 결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내용과 결론 혹은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.  
총설 : 유체기계 관련 전문분야의 연구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의 과제 등에 관한 문헌고찰을 포함하며 그 자체로서 종합적이고 독창적인 해석을 통하여 학술적으로 가치있는 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.  
단보 : 창의적이면서도 단편적인 연구결과로서 새로운 사실과 학술적으로 가치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.  
기술자료 : 유체기계 관련 전문분야의 기술적인 자료로서 실용적이면서도 새로운 사실과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(2) 한국유체기계학회에서 발생하는 한국유체기계학회 논문집의 논문은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투고한다.
- (3) 투고 받은 논문 및 원고에 대한 정보에 대해 편집위원(가),(나)는 담당 편집이사에게 통보하고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(4) 편집위원(가)가 해당 관련분야에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편집이사 또는 편집위원(나)에게 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.

### 제2조 논문집 원고의 심사

- (1) 논문의 심사는 각 분야별 편집위원(가) 또는 편집이사가 선정한 2명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의뢰하고,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- (2) 심사 결과는 “게재 가”, “게재 불가”, “수정 후 게재”, 또는 “수정 후 재심”으로 구분한다.
- (3) “수정 후 채택”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판정 후 3개월 이내에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이 확인한 후 채택한다.
- (4) “수정 후 재심”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판정 후 3개월 이내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.
- (5) 심사 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.
- (6) 심사위원이 “게재 불가”로 판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야 한다.
- (7) 심사위원 중 1명이 “게재 가”, 다른 1명이 “게재 불가”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 게재 여부는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편집위원이 결정한다.
- (8)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야 하며, 논문 심사 의견서를 온라인 논문 심사 시스템에 탑재하거나, 우리 학회 사무국으로 발송해야 한다. 30일 이내에 논문 심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편집위원은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.
- (9) 학회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.
- (10) 논문의 경우 저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### 제3조 저자 교정

- (1) 1차 교정 및 2차 교정은 원칙적으로 저자가 행한다. 이 경우 인쇄상의 오류 이외의 수정 또는 도판의 수정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저자는 수정본을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제4조 저작권

- (1)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및 원고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. 다만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본 학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학회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.
- (2) 저자는 논문게재 희망에 따른 저작권양도 확인서를 논문투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제5조 게재료

- (1) 채택된 논문의 경우 저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### 제6조 한국유체기계학회 논문집 발간

- (1) 한국유체기계학회 논문집은 연 6회(2월1일, 4월 1일, 6월 1일, 8월 1일, 10월 1일, 12월 1일) 발행하며,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 발행할 수 있다.

### 제7조 부 칙

- (1) 본 심사 규정은 2000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.

- 1차 개정일 2002년 3월 8일
- 2차 개정일 2003년 2월 14일
- 3차 개정일 2004년 3월 12일
- 4차 개정일 2004년 9월 10일
- 5차 개정일 2005년 3월 25일
- 6차 개정일 2007년 6월 8일
- 7차 개정일 2012년 9월 14일
- 8차 개정일 2020년 3월 12일